



‘한의학육성법안’ 입법예고

- 한의학 기술발전, 국가가 추진한다 -

최근 김성순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‘한의학육성법안’이 입법예고됐다.

이 법안이 입법될 경우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한의학 육성을 위한 제반시책을 강구하고 관리·운영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▲ 한의학기술정책 수립 ▲ 한의학기술개발사업 추진 ▲ 한방산업 기반 조성 등을 꾀하게 된다.

아래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양록산업도 한의학육성법안을 활용, 국산녹용에 대한 품질향상 및 각종 연구, 지원·육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<편집자 주>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의학 육성의 기본방향과 한의학기술 연구·개발의 촉진 및 육성기반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한의학”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韓藥事를 말한다.

② 이 법에서 “韓藥事”라 함은 한약의 생산(재배)·가공·제조·조제·수입·판매·감정·보관 기타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.

③ 이 법에서 “한의학기술”이라 함은 제1항에 규정한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

약제제 및 한약재 재배(우수 품종개발을 포함한다), 제조, 유통, 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일체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④ 이 법에서 “한약”이라 함은 동물·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·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.

⑤ 이 법에서 “한약제제”라 함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약제를 말한다.

⑥ 이 법에서 “한약재”라 함은 제4항의 “한약” 또는 제5항의 “한약제제”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제를 말한다.

⑦ 이 법에서 “한의학 정보화”라 함은



한의학 이론 또는 그 성과물에 대한 정보를 현대문명의 지식, 기구 등을 사용하여 수치·통계화하거나 체계화하여 사회 각 분야에 제공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한의약기술의 과학화·정보화 촉진)

① 정부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장 한의약기술정책의 수립 등

제5조(한의약육성의 기본방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육성을 위한 제반시책을 강구하고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
2. 한의약에 대한 발전기반 조성
3. 한의약기술의 정보화
4.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 기준 규격화

5.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기반조성

6.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의 촉진

7. 한약시장에 대한 지원·육성

제6조(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의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·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한의약 육성·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
2. 한의약 연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제도
3.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
4.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
5.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
6. 한의약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
7. 기타 한의약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7조(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·시행)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



관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한의약육성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의약육성지역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계획수립의 협조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종합계획·소관주요시책추진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·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3장 한의약기술개발사업의 촉진 등

제10조(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의 추진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약 기술 및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·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 및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.

제11조(한방임상센터 설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의료 및 한의약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의 한방임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방의료기관 또는 단체를 한방임상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4장 한방산업의 기반조성

제12조(한방산업단지의 조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한의학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, 민간인이 공동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



산업단지의 지원 및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13조(한약진흥재단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韓藥事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.

② 한약진흥재단의 설치 및 기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장 한약의 품질향상 등

제 14조(우수한약관리기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(이하 “우수한약관리기준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와 한약을 한약규격품 제조회사와 한방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 15조(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 선진화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한약재의 생산 및 한약의 제조·유통 등의 제반 단계별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·보관 등 선진화와 한약의 국제통상 협력에 필요한 관련 정책·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·연구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 6 장 보 칙

제 16조(비용의 보조)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.

제 17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제 18조(다른 법률의 적용)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한의약기술 연구·개발 등 한의약육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**한국약령**